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첨부

제 11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목 차

I.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II.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5
운영성과표	-----	6
주 석	-----	7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이사회 귀중

2022년 12월 4일

감사의견

우리는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 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08, 정화빌딩 2층

회계법인 상지원

대표이사 이 상 윤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22년 12월 4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본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는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재무제표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법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대표 김 지 환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이패동)
(전 화) 031 - 592 - 4919

재 무 상 태 표

제 11 (당) 기: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단위:원)

과 목	당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Ⅰ. 유동자산	1,440,645,469	1,440,645,469	-
1. 당좌자산	1,440,645,469	1,440,645,469	-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53,103,572	1,353,103,572	-
미수금	87,089,607	87,089,607	-
선납세금	452,290	452,290	-
2. 재고자산	-	-	-
Ⅱ. 비유동자산	-	-	-
1. 투자자산	-	-	-
2. 유형자산 (주석 5)	-	-	-
3. 무형자산	-	-	-
4. 기타비유동자산	-	-	-
자 산 총 계	1,440,645,469	1,440,645,469	-
부 채			
Ⅰ. 유동부채	1,038,291,933	1,038,291,933	-
미지급금	4,893,020	4,893,020	-
예수금	1,014,040,113	1,014,040,113	-
미지급비용	19,358,800	19,358,800	-
Ⅱ. 비유동부채	-	-	-
부 채 총 계	558,557,842	558,557,842	-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주석 8)	50,000,000	50,000,000	-
Ⅱ. 보통순자산	352,353,536	352,353,536	-
적립금	-	-	-
잉여금	352,353,536	352,353,536	-
Ⅲ. 순자산조정	-	-	-
순자산총계	402,353,536	402,353,536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440,645,469	1,440,645,46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 영 성 과 표

제 11 (당) 기: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단위:원)

과 목	당 기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2,041,146,031	2,041,146,031	-
기부금수익	73,000,000	73,000,000	-
보조금수익	1,951,946,031	1,951,946,031	-
회비수익	16,200,000	16,200,000	-
사업비용	1,962,845,666	1,962,845,666	-
급 여	1,222,539,418	1,222,539,418	-
사무관리비	103,658,592	103,658,592	-
공공운영비	32,615,085	32,615,085	-
국내여비	27,155,000	27,155,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20,000	2,320,000	-
퇴직급여	71,942,400	71,942,400	-
행사운영비	168,993,401	168,993,401	-
단체보조금	184,760,380	184,760,380	-
행사실비보상금	13,135,000	13,135,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5,883,200	5,883,200	-
접대비	24,919,160	24,919,160	-
직급보조비	30,930,700	30,930,7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293,700	21,293,700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5,900,000	25,900,000	-
시설비	4,863,650	4,863,65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143,500	17,143,5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92,480	4,792,480	-
사업이익(손실)	78,300,365	78,300,365	-
사업외수익	1,119,858	1,119,858	-
이자수익	1,119,858	1,119,858	-
사업외비용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79,420,223	79,420,223	-
법인세비용	-	-	-
당기운영이익(손실)	79,420,223	79,420,22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2021년 12월 31일 현재

1. 비영리법인 남양주시체육회 현황

(1)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이매동)

(2) 대표 : 김지환

(3) 법인 목적

남양주시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남양주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남양주시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 경기도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 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 주관
- 남양주시 선수 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 남양주시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사업
- 남양주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남양주시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 남양주시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그밖에 남양주시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법인전환

남양주시체육회는 국민체육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제1항 각호에 따른 남양주시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사업내용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21년 5월 24일 남양주시의 설립허가를 받아, 2021년 6월 2일 설립등기를 통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의 요약

당 회사는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후원금 수입의 수익인식기준

당 회사는 현금이나 현물을 후원(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을 후원(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현금및현금성자산

당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처분할 것이 확실한 만기보유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로, 이외의 만기보유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은 투자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당사는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 포함)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또는 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증권의 평가

당사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인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으며,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기보유증권의 원리금을 계약상의 조건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과 상각후 취득원가와 차액을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손실로 처리하고,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한 후의 회수가능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당 회사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을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되,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평가로 인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도가능증권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회수가능가액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손실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 매도가능증권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또는 손실)은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에서 차감(또는 가산)하고 있습니다.

라)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그 취득, 건설에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취득하였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는 공정한 평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선비 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단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정내용연수는 비품에 대하여 4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 퇴직연금

당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연금의 운영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한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당 회사는 당기 말 현재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자산은 없습니다. 당기 말 회사의 순자산은 사용에 제약이 없는 순자산으로 전액 보통순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 법인세등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 회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1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손금산입특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공익법인회계기준 최초 적용에 따른 비교재무제표 미작성

당 회사는 2021 회계연도 최초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부칙 제3조에 따라 전기분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 및 전기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과 목	종 류	금 액	비 고
유동자산	현 금 및 현금성자산	1,353,103,572	

4. 미수금

미수금은 유소년축구리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반납확정액 미수액으로 당기말 잔액은 87,089,607원입니다

5.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당사가 보유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 관련 법인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액으로 당기말 잔액은 452,290원입니다. 보조금 관련 통장의 예금이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관련 원천징수액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6.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생활체육지도자교육과 배드민턴협회 미결제액으로 당기 말 잔액은 4,893,020원입니다

7. 예수금

예수금은 직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 등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함께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관련 이자수입으로서 반납예정액이며 당기 말 잔액은 1,014,040,113원입니다

8.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당기 발생한 급여 등의 미지급액으로 당기 말 잔액은 19,358,800원입니다

9. 기본순자산

회사는 설립 시 출자금으로 50,000,000원의 예금자산을 기본순자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0. 사업비용

사업비용은 사업수행에 지출한 직접비용으로 사업수행에 관한 직접인력비용과 직접 경비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사업비, 행사운영비, 남양주시 체육단체 보조금, 관련 시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과 일반관리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기 1,962,845,666원입니다

11. 순자산의 변동내역

당기 순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기초(2021.01.01)	50,000,000	-	272,933,313	-	50,000,000	-	
기본순자산증감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79,420,223	-	-	-	
기말(2021.12.31)	50,000,000	-	352,353,536	-	50,000,000	-	

12.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

□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부처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액	2021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집행	
						교부·지급			발생이자			자기	지자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국고 보조금	자기 부담금	지자 부담금
시보조 금	합계			2,535,245,000	100,000,000		2,133,745,000			1,128,097			1,134,100
시보조 금	생활체육단체육성			932,025,000			932,025,000			432,539			860,346
시보조 금	생활체육종목 활성화 지원			158,000,000			158,000,000			102,476			39,133
시보조 금	시장기 체육대 회 개최지원			155,000,000			155,000,000			87,966			53,522
시보조 금	경기도 생활체 육 대축전 참가 지원			85,500,000			0			0			
시보조 금	열수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지원			50,000,000			0			0			
시보조 금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0,000,000			0			0			
시보조 금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63,420,000			63,420,000			35,636			28,651
시보조 금	남양주시태권도 협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지원			80,000,000			0			0			
시보조 금	생활체육 동호 인 클럽 육성지 원			50,000,000			50,000,000			32,906			3,060
시보조 금	의장기 체육대 회 개최지원			60,000,000			60,000,000			35,518			8,746

시보조 금	생활체육 종목 공모사업			200,000,000			200,000,000			114,161			49,851
시보조 금	열수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개최지원			26,000,000			0			0			
시보조 금	남양주 시장배 유소년 축구리그개최 지원			19,000,000			19,000,000			14,439			
시보조 금	남양주 열수전국배드민 턴대회개최			20,000,000			0			0			
시보조 금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12,800,000			12,800,000			2,987			3,621
시보조 금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지원			300,000,000			300,000,000			166,010			330,000
시보조 금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지원			5,700,000			5,700,000			2,189			350,000
시보조 금	열수 정약용 단 축 마라톤 개최지 원			100,000,000			0			0			
시보조 금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95,000,000			95,000,000			50,476			57,558
시보조 금	종목별 단체육성지원			82,800,000			82,800,000			50,794			28,958
시보조 금	경기도 종별 태 권도 선수권 대 회개최 지원			30,000,000			0			0			
시보조 금	열수 정약용 단 축 마라톤 개최 지원					100,000,000			56,613			825,000	
시보조 금 (기금)	합계			123,700,000			60,200,000			34,734			31,809
시보조 금 (기금)	생활체육운영 지도자 육성			58,800,000			58,800,000			34,734			30,409
시보조	경기도체육대회			35,800,000			0			0			

금 (기금)	입상지원												
시보조 금 (기금)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종목 역량강화 지원		24,100,000				0			0			
시보조 금 (기금)	엘리트 대회 입상자 지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5,000,000			1,400,000				0			1,400,000
국비	합계		105,894,000				105,894,000			134,707			
국비	시군생활 체육회 운영지원		12,000,000				12,000,000			21			
국비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운 영		60,694,000				60,694,000			101,023			
국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11,800,000				11,800,000			19,224			
국비	남양주 시장배 유소년 축구리그개최 지원 (도비)		19,000,000				19,000,000			14,439			
국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400,000				2,400,000			0			
도비	합계		181,304,000				173,968,000			64,653			
도비	꿈나무 스포츠 학교운영		24,280,000				21,680,000			7,036			
도비	경기도 스포츠 클럽육성 지원		86,700,000				86,700,000			38,350			
도비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		48,770,000				48,770,000			15,482			
도비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		19,594,000				14,858,000			203			
도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1,960,000				1,960,000			3,582			

국도시비	합계			437,904,000				437,904,000			211,957		
국도시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8,952,000				218,952,000			101,068		
국도시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8,952,000				218,952,000			110,889		
도시비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			16,702,000				16,702,000			8,565		
도시교육청	초등 스포츠 클럽			122,869,000				122,069,000			52,235		
교육청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			95,000,000				95,000,000			56,308		

보조사업별 유·무형자산

부처	세부사업명	면적	소재지	2021		
				기초	취득	처분
				해당 사항 없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남양주체육회 지원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남양주체육회
감사대상 사업연도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¹⁾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 ⁵⁾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²⁾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등 전문가 ³⁾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 ⁴⁾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 ⁶⁾	1		1								2	
투입 시간 ⁷⁾	분·반기 검토											
	감사	15		10							25	
	합계	15		10							25	

-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입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인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 ¹⁾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 ²⁾ : 2022 . 09 . 1 . ~ 20 (1일) - 주요 내용: 시설 현황 및 예결산 내역 파악		
현장감사 주요 내용 ³⁾	수행 시기 ²⁾	투입 인원 ⁴⁾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2022.11 .25 . ~ (일)	상 주 (1)명, 비상주 (1)명	세입세출 내역 및 증빙실사 보조금 지출내역과 주석기재사항 검토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 (일)	상 주 ()명, 비상주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 ²⁾ : ~ (일) - 해당사항 없음 - - 현장조사(참관) 장소 ⁵⁾ :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 ²⁾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 ⁵⁾ : -해당사항없음-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 ⁶⁾ (○), 채권채무조회 ⁶⁾ (-), 변호사조회 ⁶⁾ (-) 그 밖의 조회 ⁷⁾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 ⁸⁾	- 횟수: (1)회 - 수행 시기: 2022.11.25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 ⁹⁾ : 해당사항없음 - 수행시기: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 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참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이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80g/㎡)]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 ¹⁾	일자	참석자 ²⁾	방식 ³⁾	주요 논의 내용
1		해당사항없음		
2				
3				
4				

-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주석 12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참조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사업	면적	소재지	2021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해당사항없음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4098	직위	이사	성명	서해중
연락처	042-471-5410					